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통합표본전시실 규정

제정 2004. 9. 1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통합표본전시실(이하 “통합표본전시실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통합표본전시실은 식물, 동물, 곤충, 수목표본을 통합하여 전시 및 관리하며 분야별로 표본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표본실을 따로 둘 수 있다.

제3조(직무) 통합표본전시실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식물, 동물, 곤충, 수목 분야의 교육에 필요한 표본의 수집, 보존, 전시
2. 관련 학문 분야의 교육에 필요한 표본의 이용과 지원
3. 교수 및 대학원 학생의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이용과 지원
4. 외부 단체 및 학생 견학 이용, 학습 정보 제공

제4조(실장) ① 통합표본전시실에는 실장을 두되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.

②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5조(전시실) 교육과 견학에 필요한 표본은 표본전시실에 전시하며 실장이 표본전시실을 관리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통합표본전시실에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통합표본전시실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교무부학장, 행정실장 및 본 대학 교원 중에서 통합표본전시실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
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기타 통합표본전시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
부칙(제56호, 2004.9.10.)

이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